형사책임의 목적에 대한 리해

장 성 철

형사책임의 목적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는 형사책임과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형사책임의 종류와 그 내용, 원칙 등 형사책임과 관련한모든 문제는 형사책임의 목적에 맞게 규정되며 그 실현에 복무한다. 여기로부터 형사책임의 목적은 형사책임리론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 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 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재산과 인민의 헌 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김일성**전집》제50권 247폐지)

공화국형법의 목적은 우리 국가가 형사 책임을 제정하고 범죄자들에게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 갖 범죄적침해로부터 보위하고 공민들의 적 법적리익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공 고화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성 과적추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은 가장 엄격한 법 적책임의 일종으로서 그의 제정과 적용은 일 정한 목적을 지향하며 그것을 기본전제로 하 여 산생된다. 형사책임의 목적을 떠난 형사 책임의 제정과 적용이란 있을수 없다.

형사책임은 행위자가 수행한 사회적으로 위험한 범죄행위의 후과와 관련하여 지게 되는 법적책임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사법기관이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는 법적책임이다.

형사책임의 본질적내용으로부터 형사책임의 목적을 두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권력기관, 사법기관이 주동적

으로,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제정하고 추 궁하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자가 피 동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것은 호상련관성을 띤 동일한 문제의 두 측면이다. 그것은 국가가 형사 책임을 제정하고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추 궁하는 과정은 곧 범죄자가 형사책임을 지 는 과정이기때문이다.

이 두가지 측면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룬다. 실천에서 국가와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제정, 추궁하는것만 있고 범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것이 없는 경우란 있을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제정이나 추궁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것만 있고 국가나 사법기관의 형사책임에 대한 제정이나 추궁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없다.

실례로 고의적살인죄를 감행한 후 범죄자가 자살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이것은 형사법적측면에서 보면 응당 사형의 경우와같이 범죄자의 생명박탈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사법기관의 추궁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진것으로 될수 없다.

이렇게 놓고보면 형사책임의 목적은 국가가 형사책임을 제정하고 사법기관이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범죄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목적이다.

형사책임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 제들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는것이 중요 하다.

첫째로, 형사책임의 목적과 형법의 목적, 형벌의 목적과의 관계문제를 정확히 리해 하여야 한다. 그것은 그것들사이에 밀접한 련관이 있는것과 관련된다.

형법과 형사책임, 형벌의 관계는 추상적 인것으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형법은 형사책임과 형 벌의 집합적개념이며 형사책임은 또 형벌 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형법학에서는 형법을 범죄와 형벌 혹은 범죄와 형사책임, 형벌로 구분하고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형사책임과 형벌은 형법의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며 처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형법은 형사책임과 형벌의 관계를 놓고볼 때 형벌은 형사책임을 실현하는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절대다수의 범죄에서 형벌적용으로 형사책임을 실현한다.

때문에 형사책임의 목적과 형법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일정한 련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시말하여 형법의 목적은 형사책임 의 목적에 추상적인 웃한계를 확정해주며 형벌의 목적은 형사책임의 목적에 구체적 인 아래한계를 확정해준다. 이로부터 형사 책임의 목적은 형법의 목적실현에 지향되 며 형벌의 목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리론적으로 분석하여볼 때 형사책임의 목적은 형벌의 목적과 일치된다.

둘째로, 형사책임의 목적과 민사책임, 행정책임의 목적의 차이를 정확히 리해하여야 한다. 그것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은 다같이 법적책임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들간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것과 관련된다.

민사책임의 목적은 주로 이미 발생한 권리침해 및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회복하게 하는 보상성과 원상회복성을 띤다. 행정책임의 목적은 주로 행정적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행정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이와 달리 형사책임의 목적은 형법령역의 개념의하나로서 범죄에 대한 징벌, 제재를 통하여 범죄의 예방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형사책임의 목적은 형법의 목적을 실현 하기 위한것으로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 다. 여기에는 개별예방과 일반예방이 포함 되다.

개별예방은 범죄자본인이 다시 범죄를 감행하는것을 예방하는것으로서 범죄자에 게 해당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 여 그로부터 적어도 일정한 기간 혹은 영 원히 재범가능성을 제거하며 범죄의식을 개 조하여 다시는 범죄를 감행하지 않도록 하 는것을 말한다.

일반예방은 개별예방에 대응되는 말로 서 범죄적요소를 가지고있는자들이 죄를 범 하는것을 예방하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범 죄자에게 일정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 을 통하여 사회의 다른 성원들, 주로는 범 죄적요소를 가지고있는자들이 죄를 범하 는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 일반예방과 개별예방의 관계문 제를 정확히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학술 적으로는 량자를 범죄예방의 두 측면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는 일반예방이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있는자, 피해자, 기타 법을 지 키는 공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개별예방 이 단지 현실적으로 범죄를 감행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로부터 량자간의 관 계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나라들의 형사책임리론에서는 일반예방과 개별예방을 다같이 중시하는 견해와 형사책임의 제정, 적용, 집행의 매 단계들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제정단계에서는 일반예방을 위주로 하고 적용단계에서는 일반예방과 개별예방을 다 중시하며집행단계에서는 개별예방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개별예방을 위주로 하거나 범죄예방을 개별예방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일반예방이 형사책임의 목적이라는것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극히 일면적이거 나 과학적타당성이 없는 견해이다.

공화국형법리론은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예방을 위주로 하면서 일반예방을 같 이 중시할것을 요구한다. 물론 개별예방은 일반예방에 비하여 더 중요한 형사책임의 목적이다. 형사립법상에서 볼 때 국가는 립 법의 형식으로 죄와 형벌사이의 관계를 확 정하며 형법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응 당 형벌을 받아야 할 범죄로 되는가를 규 정하고 각종 범죄가 받아야 할 형벌의 종 류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사회에 구체적인 범죄와 그에 따 르는 형벌의 내용을 제시하여 범죄적의도 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경고, 자극, 위협의 작용을 주어 그의 범죄감행을 저 지시키는것과 함께 광범한 인민대중으로 하 여금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 서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만일 일반예방의 목적을 지나치 게 강조하게 되면 개별예방에 알맞는 형 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는 편향을 범 하게 되며 나아가서 형벌의 목적을 원만 히 달성할수 없게 한다.

형사책임은 그 목적으로부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궁된다.

범죄행위의 사실사정들과 함께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는 형사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선차적인 고려사항이며 따라서 개별예방을 위주로 한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예방을 차요시할수 있는 형사책임의 목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형사립법은 일반사회성원(기본적으로는 범죄적요소를 가지고있는자)들을 대상으로 하며주로는 초범을 방지하는데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반예방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형사사법활동은 형사립법을 실현하는 활동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추궁을 통하여 범죄적의사를 가지고있거나 범죄적영향을 받고있는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자극,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범죄자에게 응당한 징벌을 가하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이 범죄와

의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교양으로도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안정을 보장하는 작용도 한다.

범죄예방에서는 개별예방을 위주로, 일 반예방을 보조로 하는것이 리론실천적으 로 타당하다.

형사책임의 목적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과학적리해를 가지자면 다른 나라 형법리 론들에서 주장하고있는 형사책임의 목적 과 관련한 견해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해보 는것이 필요하다.

형사책임의 목적과 관련하여 각국의 형법리론들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 론쟁을 심화시키고있다. 이들의 견해를 보면 대체로 세가지 견해에 국한시켜 론의하고있다. 즉 형사책임의 목적은 보응으로서 범죄가 원인이고 형사책임이 범죄의당연한 결과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보응주의》)와 국가가 형사책임을 제정하고 추궁하는것은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보응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목적주의》) 그리고 형사책임은 범죄에 대한 보응일뿐아니라 범죄의 발생에 대한 예방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절충주의》)이다.

이들의 견해를 분석해볼 때 징벌 그자 체를 형사책임의 목적으로 삼는것은 개념 상에서 형사책임의 목적과 형사책임의 본 질을 혼탁시키는것으로서 리론실천적으로 부당하다.

형사책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가장 엄격한 징벌이라는데 있다. 《보응주의》에서와 같이 만일 징벌을 형사책임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론리적으로 볼 때 해당국가가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사책임의 목적은 징 벌이 아니며 징벌은 형사책임의 본질이다. 형사책임의 고유한 속성은 형사책임의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로 된다. 형 사책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사 람들이 형사책임의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 기 위한 전제이다. 이처럼 량자간에는 뚜 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징벌 그자 체를 형사책임의 목적으로 삼는것은 그릇 된 견해이다.

형사책임의 목적은 마땅히 범죄를 예방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반예방과 개별예방을 형사책임의 목적으로 리해하는것은 리론실천적으로 타당하다.

우리는 형사책임의 목적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가지고 형사책임과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